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53281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5256(중복)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7. 6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최기호	전자서명완료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18. 11. 6.(근저당)		배당요구종기	2026. 1. 5.	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 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 분	점유의 권 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하나로 대부주 식회사(변경후 세울건 대부주 식회사)	전부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전세권자		5,000,000					
<비고> 하나로대부주식회사(변경후 세울건대부주식회사):전세권등기일은 2023.6.19.임										
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	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부동산의 표시란에는 건물명이 없으나, 현황은 '리치모어'라고 표시되어 있음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53281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11-17

[도로명주소]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783번길 32

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7층 다세대주택,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

1층 47.11㎡

2층 141.45㎡

3층 141.45㎡

4층 140.19㎡

5층 140.19㎡

6층 140.19㎡

7층 140.19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3층302호

철근콘크리트구조 57.19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11-17

대 280㎡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. 280분의 18.469

감정평가액

350,000,000

회차

기 일

최저매각가격

매수신청보증금

1회

2026.08.14

350,000,000

35,000,000

2회

2026.09.21

245,000,000

24,500,000

3회

2026.10.26

171,500,000

17,150,000

4회

2026.11.30

120,050,000

12,005,000

부동산의 표시란에는 건물명이 없으나, 현황은 '리치 모어'라고 표시되어 있음